2011. 7. 18. (월) 10:00

제176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__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__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O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1. 7. 4. 거창군수

O 회부일자: 2011. 7. 4

O 상정일자: 2011. 7. 13(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O 의안번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2011 ~ 40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2011 ~ 41호)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차인잔액 | 다음연도 이월액 | | | | |
|------|------------|------------|--------|----------|----------|------------|-------------|------------|
| 구 분 | 결산액 (A) | 결산액 (B) | (A-B) | 명시 이월 | 사고 이월 | 계속비 이 월 | 보조금 사용잔액 | 순세계 잉여금 |
| 계 | 425,332 | 359,355 | 65,977 | 20,058 | 14,095 | 12,709 | 1,370 | 17,744 |
| 일반회계 | 369,411 | 326,650 | 42,761 | 19,123 | 13,253 | 7,090 | 1,342 | 1,953 |
| 특별회계 | 55,921 | 32,705 | 23,216 | 935 | 842 | 5,619 | 28 | 15,791 |

- O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 수납액은 425,332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359,355백만원으로
 - 차인잔액은 65,977백만워임.
- O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 시 이 월 : 20,058백만원

- 사 고 이 월 : 14,095백만원

- 계속비 이월 : 12,709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 1,37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7,744백만원임.

2)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신제수난애 | 미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 | 비율(%) | |
|------|---------|---------|---------|-------|---------|-------|--------|-------|
| 구 분 | (A) | (B) | (C) | | 결손처분 | 이월 | C/A | C/B |
| 계 | 434,989 | 430,102 | 425,332 | 4,770 | 851 | 3,919 | 97.8% | 98.9% |
| 일반회계 | 379,248 | 373,395 | 369,411 | 3,984 | 791 | 3,193 | 97.4% | 98.9% |
| 특별회계 | 55,741 | 56,707 | 55,921 | 786 | 60 | 726 | 100.3% | 98.6% |

O 2010년도 실제수납액은 425,331,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30,102백만원 대비 98.9%이며, 미수납액은 4,770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임

3) 세출결산

(단위: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A) | 예산성립 후증감액 (B) | 예산현액 (C)=A+B | 지출원인 행 위 액 (D) | 지출액 (E) | 다음연도 이 월 액 (F) | 불용액 G=C-E-F | 미수납액 G/C (%) |
|------|------------|---------------------|-----------------|----------------------|------------|----------------------|----------------|--------------------|
| 계 | 377,837 | 57,152 | 434,989 | 392,536 | 359,355 | 46,862 | 28,772 | 6.6% |
| 일반회계 | 329,262 | 49,986 | 379,248 | 352,877 | 326,650 | 39,466 | 13,132 | 3.5% |
| 특별회계 | 48,575 | 7,166 | 55,741 | 39,659 | 32,705 | 7,396 | 15,640 | 28.1% |

O 2010년도 총 지출액은 359,355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434,989백만원의 82.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86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8%이며 집행잔액 28,772백만원은 예산현액의 6.6%임

(단위: 천원)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일반회계)

| | | 과 목 | | 예산액 | 전용 | 금액 | 사 유 | |
|------------|------------|-----------------|---------------------|-----------------|-----------|--------------------------|---|----------------|
| 조직 | 부문 | 세부사업 | 통계목 | 게난ㅋ | 감액 | 증액 | /\ \ \ \ \ \ \ \ \ \ \ \ \ \ | |
| | | 총 12 건 | | 41,841,862 | 1,702,590 | 1,702,590 | | |
| 주민생 활지원 | 취약계 층지원 | 장애인업무 추진 | 201-01 사무관리비 | 10,172 | 2,000 | | 장애인복지대회의 원활한 추진 | |
| 과 | 층지원 | 장애인 행사 지원 | 307-04 민간행사보조 | 32,000 | | 2,000 | 원활한 추진 | |
| 주민생 취약 | 취약계 층지원 | 장애인 행사 지원 | 201-03 행사운영비 | 3,500 | 3,150 | | u u | |
| 과 | 증지원 | 장애인 행사 지원 | 307-04 민간행사보조 | 34,000 | | 3,150 | | |
| 행정과 기타 | 인건비 | 101-01 보수 | 27,036,146 | 1,400,000 | | 법정경비인 봉무원연금 부담금 납부 | | |
| | 4 /14 | 인건비 | 304-01 연금부담금 | 3,109,532 | | 1,400,000 | 아무현 년리 부담금 납부 | |
| 경제과 | 노동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 206-01 재료비 | 252,369 | 10,940 | | 저소득취약계층 의슬 레이트 지붕개량 | |
| 70/14 |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 401-01 시설비 | 2,500 | | 10,940 | 지붕개량 | |
| 문 화 | -J) -J) | - | 관광활성화 지원 | 201-01 사무관리비 | 37,172 | 12,400 | | 신축관광펜션 집기구입 |
| 관광과 | 관광 | 관광활성화 지원 |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 | | | 12,400 | 집기구입 | |
| 문 화 | 관광 | 관광 활성화지원 | 201-01 사무관리비 | 24,772 | 10,000 | | 문화관광버스 투어민간위탁 운영금 | |
| 관광과 | 17.0 | 관광 활성화지원 | 307-04 민간행사보조 | | | 10,000 | 구 이 근신 기 의 운영금 | |
| 문 화 | 체육 |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 | 201-03 행사운영비 | 140,000 | 30,000 | | 제43회전국남녀 학생종별탁구대 회원활한 추진 | |
| 관광과 | <u> </u> |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 | 307-04 민간행사보조 | 998,600 | | 30,000 | 회원활한 추진 | |
| 산림환 | 임업. | 공공숲가꾸기 | 201-02 공공운영비 | 109,960 | 80,000 | | 공공근로숲가꾸 기 인건비로 | |
| 경과 | 임업· 산촌 | 공공숲가꾸기 | 101-04기간제 근로자등보수 | 2,513,022 | | 80,000 | 사용 | |

| 산림환 경과 | 임업 · 산촌 | 공공숲가꾸기 | 206-01 재료비 | 195,475 | 50,000 | | 공공근로숲 가꾸기 건비로 |
|------------|------------|-----------------|---------------------|-----------|--------|--------|---------------------------------|
| 경과 | 산촌 | 공공숲가꾸기 | 101-04기간제 근로자등보수 | 2,593,022 | | 50,000 | 사용 |
| 건설과 도로 | ㄷㄹ | 도로 유지관리 |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77,700 | 29,700 | | 재설작업에 필요한 재료 필입부족으로 전용 |
| | 工工 | 도로 유지관리 | 206-01 재료비 | 22,320 | | 29,700 | 구입부족으로 전용 |
| 농업기 술센터 | 농업· 농촌 | 도농교류 추진 | 201-03 행사운영비 | 16,000 | 14,400 | | 사업의 원활한 추진 |
| 술센터 | 농촌 | 도농교류 추진 | 307-04 민간행사보조 | | | 14,400 | 원활한 추진 |
| 농업기 술센터 | 농업 · 농촌 | 광역친환경농 업단지조성 | 402-01 민간자본보조 | 4,500,000 | 60,000 | | 친환경분야 핵심자체사업 예산 미반영 |
| | | 친환경농업 지원 | 206-01 재료비 | 129,600 | | 60,000 | 예산 미반영 |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 체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O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체 : 해당없음

5) 계속비 결산

| 재원 | 사 업 명 | 예 산 액 | 전 년 도 이월사업비 |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 į | 합 계 | 32,655,378 | 26,114,527 | 26,114,527 | 17,291,569 | 8,624,160 | 198,798 |
| 국고 보조 | 거창문화원 건립 | | 4,522,078 | 4,522,078 | 3,927,158 | 594,877 | 43 |
| 국고 보조 |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 | 954,768 | 954,768 | 49,881 | 904,843 | 44 |
| 국고 보조 | 거창국민체육 센터 건립 | | 4,054,656 | 4,054,656 | 3,859,739 | 0 | 194,917 |
| 국고 보조 | 소규모용수개발 | | 3,626,926 | 3,626,926 | 1,884,682 | 1,742,244 | 0 |
| 국고 보조 | 소도읍 육성 | | 8,418,533 | 8,418,533 | 5,474,507 | 2,940,301 | 3,725 |
| 국고 보조 | 거창사과테마 파크조성 | | 4,537,566 | 4,537,566 | 2,095,602 | 2,441,895 | 69 |

(단위: 천원)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관리하며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 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94.8%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6)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위: 백만원)

| 구 | 분 | 건 수 | 예산현액 | 이월액 | 비고 |
|-------|------|-----|--------|--------|----|
| | 계 | 86 | 69,510 | 20,058 | |
| 명시이월 | 일반회계 | 82 | 63,770 | 19,123 | |
| | 특별회계 | 4 | 5,740 | 935 | |
| | 계 | 90 | 90,628 | 14,095 | |
| 사고이월 | 일반회계 | 80 | 80,541 | 13,253 | |
| | 특별회계 | 10 | 10,087 | 842 | |
| | 계 | 9 | 35,925 | 12,709 | |
| 계속비이월 | 일반회계 | 7 | 20,112 | 7,090 | |
| | 특별회계 | 2 | 15,813 | 5,619 | |

【심사의견】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2010년도 예산이월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86건 20,058백만원 사고이월이 90건 14,095백만원, 계속비이월 9건 12,709백만원으로 시기미도래, 공기미도래(부족),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되었음.
- 이는 전년도 (명시이월 78건 19,078백만원, 사고이월 65건 14,569백만원)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태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7) 예비비 결산

| | | | | | | (단위 : 천원) |
|----------|-----------------------------------|------------|---------------|-----------|-----|-----------|
| 세부 | 지출사유 |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 잔액 |
| 합 계 | 11 건 | 1,305,421 | 1,204,140 | 1,204,140 | 0 | 101,281 |
| 소송 관리 | 소송사건공탁금 | 36,631 | 36,631 | 36,631 | 0 | 0 |
| 소송관리 | 소송사건공탁금 | 45,000 | 45,000 | 45,000 | 0 | 0 |
| 공공근로사업 | | 170,000 | 131,052 | 131,052 | | 38,948 |
| 일자리창출사업 | 기어거게 취치되 ㄷ | 448,840 | 446,898 | 446,898 | | 1,942 |
| 일자리창출사업 | ·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 시책추진 | 13,000 | 12,995 | 12,995 | | 5 |
| 일자리창출사업 | 八名千位 | 30,000 | | | | 30,000 |
| 일자리창출사업 | | 128,000 | 97,614 | 97,614 | | 30,386 |
| 농촌환경정비 | 4호 태풍 "덴무"도로피해 복구 | 130,000 | 130,000 | 130,000 | 0 | 0 |
| 주민편 위업추진 | 8.15-17일 집중호우 공공시설 복구 | 197,800 | 197,800 | 197,800 | 0 | 0 |
| 도로유지관리 |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구입비 | 40,000 | 40,000 | 40,000 | 0 | 0 |

【심사의견】

고품질쌀생산지원

일조 피해농가 재해

보상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예비비)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본예산에 일반회계의 1/100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며, 지출결과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66,150

66,150

66,150

0

0

○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1,305,421천원으로서 소송사건 공탁금 등 11개사업에 1,204,140천원은 지출하고, 101,281천원은 불용으로 처리 되었음. 예비비의 경우 사업량 사업비 등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용으로 처리된 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와 연계되므로 앞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을 할 경우 정확한 사업비를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 요구됨.

8) 기금결산

(단위:천원)

| 종 류 별 | 전년도말 | 당해연도 | - 증감액 | 당해연도말잔액 |
|-------------|-----------|-----------|---------|-----------|
| 종 류 별 | 잔액 (A) | 수납액 (B) | 지출액 (c) | (D=A+B-C) |
| 합 계(8건) | 5,822,765 | 2,827,785 | 675,512 | 7,975,038 |
| 아림예술제진흥기금 | 500,433 | 19,672 | 19,000 | 501,105 |
| 체육진흥기금 | 50,336 | 1,914 | 0 | 52,250 |
| 식품진흥기금 | 17,309 | 3,679 | 13,211 | 7,777 |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516,131 | 19,772 | 20,800 | 515,103 |
| 노인복지기금 | 1,027,421 | 32,683 | 14,500 | 1,045,604 |
| 여성발전기금 | 1,013,586 | 41,570 | 22,100 | 1,033,056 |
| 재난관리기금 | 886,142 | 471,271 | 532,901 | 824,512 |
| 중소기업육성기금 | 1,353,905 | 2,041,430 | 0 | 3,395,335 |
| 기초생활보장기금 | 311,360 | 152,764 | 0 | 464,124 |
| 생활안정기금 | 146,142 | 43,030 | 53,000 | 136,172 |

【심사의견】

- O 2010년도 현재 거창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822,765천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827,785천원이고, 당해연도 기출액은 675,512천원으로서 차인잔액은 7,795,038천원임.
- O 당해연도 지출액이 전혀 없는 3개기금(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9) 채권액 결산

(단위: 천원)

| 7 | 보 분 | 전년도말 현 재 액 | 당 해 연 도 발 생 액 | 당 해 연 도 소 멸 액 | 당해연도말 잔 액 |
|------------|------------------|---------------|------------------|------------------|--------------|
| <u>ŏ</u>] | ' 계 | 4,699,930 | 1,823,770 | 1,489,715 | 5,033,985 |
| e e | l 반 회 계 | 3,970,018 | 164,645 | 525 | 4,134,137 |
| - | 소 계 | 485,743 | 1,490,281 | 1,348,545 | 627,479 |
| 별 | 농업발전기금 | 110,541 | 6,750 | 5,484 | 111,807 |
| 회 계 | 산업단지 조성사업 | 375,202 | 1,483,531 | 1,343,061 | 515,672 |
| 7 (저소득 | 기 금 주민생활안정자금) | 244,169 | 168,844 | 140,645 | 272,368 |

-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권액은 5,033,985천원으로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4,604,088천원이며, 이행기간 도래액은 429,897천원임.
- 이 중 이행기간 도래액 429,897천원은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10) 채무액 결산

| ī | 그 분 | 전년도말 현 재 액 | 당 해 연 도 발 생 액 | 당 해 연 도 소 멸 액 | 당해연도말 잔 액 |
|-------------|---------|---------------|------------------|------------------|--------------|
| ğ | 급 계 | 14,259,000 | 5,200,000 | 2,583,200 | 16,875,800 |
| Ó | 실 반 회 계 | 6,800,000 | | 2,100,000 | 4,700,000 |
| 공기 | 소 계 | 7,459,000 | 5,200,000 | 483,200 | 12,175,800 |
| 업 특 명 | 상수도사업 | 7,348,400 | 5,200,000 | 451,600 | 12,096,800 |
| 전바 별회계 | 하수도사업 | 110,600 | | 31,600 | 79,000 |

【심사의견】

○ 2009년도 말 우리 군에서 갚아야할 채무액은 14,259,000천원에서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을 위해 2010. 9. 30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5,200,000천원이 발생하고, 2,583,200천원을 상환하였으며, 201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6,875,800천원임.

11) 보조금 결산

(단위: 천원)

| | 구 분 | | 예 산 액 | 수 령 액 | 집 행 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 , | 합 계 | | 158,192,212 | 157,799,266 | 135,174,856 | 19,483,261 | 3,141,109 |
| | 일반회계 | | 156,468,694 | 156,102,040 | 133,480,749 | 19,483,261 | 3,138,030 |
| 町 | 소 > | 계 | 1,723,518 | 1,697,186 | 1,694,107 | 0 | 3,079 |
| 별 회 | 의료보 기 | 호 금 | 192,410 | 169,506 | 169,506 | 0 | 0 |
| 계 | 수질개 | 선 | 1,531,108 | 1,527,680 | 1,524,601 | 0 | 3,079 |

- 2010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57,799,226천원이고 예산액 158,192,212천원 대비 99.8%이며, 집행액은 135,174,856천원으로 예산액의 85.5%이며 19,483,261 천원이 이월되고 3,141,109천원을 반납하였음.
- O 일반회계 군비부담액은 51,339,253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2.6%에 해당함.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가. 총 평

⇒ 2010년도 세입·세출 최종 재정규모는

O 세입: 425,331,667천원

O 세출: 359,355,179천원

- 이월액(잔액): 65,976,488천원으로서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명시이월 20,057,811천원, 사고이월 14,095,202천원, 계속비이월 12,709,375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1,369,60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744,498천원임.
- O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방향을 보면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경제위기 이후, 신지역 성장 잠재력 선점, 지방재정의건전성, 효율성, 안전성 확보 등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나예산현액의 15.2%인 65,976,488천원이 이월되어 27,828,24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므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 주민에 의한 직접적 재정 통제기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 산정과 성과 평가가 가능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이 대폭 향상 되었으며 재무보 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종전보다 나아졌는지 여부와 단체장과 공무원이 전문경영인의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세입면에서 보면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5,150,499원, 지방세 부담액은 297,531원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지방교부세나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등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지역부존자원 개발과 경영수익 사업 활성화로 지역 세입기반 확충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됨.
- O 세출면에서는 지방재정 법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의거 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산집행과정에 있어건전성, 계획성, 윤리성, 효율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각종 사업면에서는 당초 계획한 사업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 하였으나 주 요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객 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하고 투자 심사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경비의 집행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배정하고 집행하였으나 각부서간 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시성, 선심성 소모성경비, 불요불급 경비의 억제 와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됨.
- 보조금은 국가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보조사업은 특정사업의 진흥이나 장려, 행정목적수행 등 공익적 지출을 극대화 하여야 하며 특정분야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특혜시비와 형평성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사후관리가 요구됨.
- O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기금은 10종으로 운용실적이 저조하며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여유자금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은행에 정기예금, CD등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채권액인 융자사업은 융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군 재정 운영에 막 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기연체 채권회수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됨.

나. 2010년 군정 성과

O 2010년도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선5기 매력있는 창조 거창" 군정을 출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 고품질 서비스 창출을 위한 행정다이어트 추진, 군민 화합을 통한 역량 결집에 노력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상 등 40개 분야, 시상금 1,533백만원· 공모사업 41개 분야, 사업비 14,049백만원을 획득하는 등 보람찬 성과를 거두었음.

다. 미흡한 사항

- O 2010년도 군정 운영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 역점시책별로 추진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특히 농업분야에서 영세농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며, 복지 분야에서는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음.
- 4. 질의 및 답변(생략)
- 5. 토론요지(생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